

— < 2005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 —

문 답 자 료

2005.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1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14
3.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8
4. 조세피난 과세제도 정비	21
5.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25
6.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 부가세 면세	33

<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

7.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34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37
9.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38
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39
1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40
1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42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44
1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45
15.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	46
16. 주세율 조정	47
17. LNG 세율 조정	49
18.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51
19.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제도 활성화	55

2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	56
21. 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59
22. 장기임대주택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60
23.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	61
24.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62
25. 과세인프라 구축	63

< 국가균형발전 지원 >

26.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65
27.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67

<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28. 성실 중소기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72
29. 연말정산 간소화	76
30.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78
31. 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 ·	79
32. 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	80
33.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	81
34.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84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① 구조조정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세제를 운용
 - 합병, 분할, 현물출자, 통합 및 법인전환시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법인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거나 벤처기업등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 교환시 과세이연
 - 정리계획·화의인가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해 익금불산입한 후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

-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예:업종전환)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를 보완*하되 원칙에 충실하도록 설계
 -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 개선
 - 다만, 세제지원의 혜택이 특정주주나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특정성 배제
 - 도덕적 해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액감면방식보다는 과세이연방식을 활용

* 기존 구조조정 지원세제(15개)중 8개를 부분보완하고 4개 신설

② 합병·분할시 자산의 이전에 따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

<사 례>

□ 장부가액 10억원(시가 30억원)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고 소멸

○ 합병법인은 부동산을 시가인 30억원으로 승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20억원)에 대하여는 다음방법으로 과세

①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처분하고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익(20억원)을 청산소득으로 과세

⇒ 다만, 일정요건(1년이상 계속사업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중 주식가액이 95%이상)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시점에서 청산소득이 과세되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

② 이와 같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차익은 합병법인에게 합병평가차익(20억원)으로 과세

⇒ 다만,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이 처분(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

예) 5년후 당해 부동산을 40억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40억원- 30억원 = 10억원)외에 과세이연된 합병평가차익(20억원)을 합한 3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

□ 현재 토지, 건축물만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06.1.1 부터는 기계장치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과세체계는 동일

③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1) 합병의 경우

<사례> A법인(제조업)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B법인(건설업)을 흡수합병한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A법인(제조업) (자산 20억원)	+	B법인(건설업) (자산 10억원) <small>(소멸, 결손금 5억원)</small>	=	A법인(제조,건설) (자산 30억원) <small>* 소득 10억원 발생</small>
-----------------------	---	---	---	--

- 현재는 합병법인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하여 승계받은 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내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

예) 구분경리 결과, 제조업 소득 8억원, 건설업 소득 2억원인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5억원은 건설업 소득(2억원)에서만 공제
*나머지 3억원은 당초 발생시점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 구분경리가 쉽지 않음
- 따라서, '06.1.1부터는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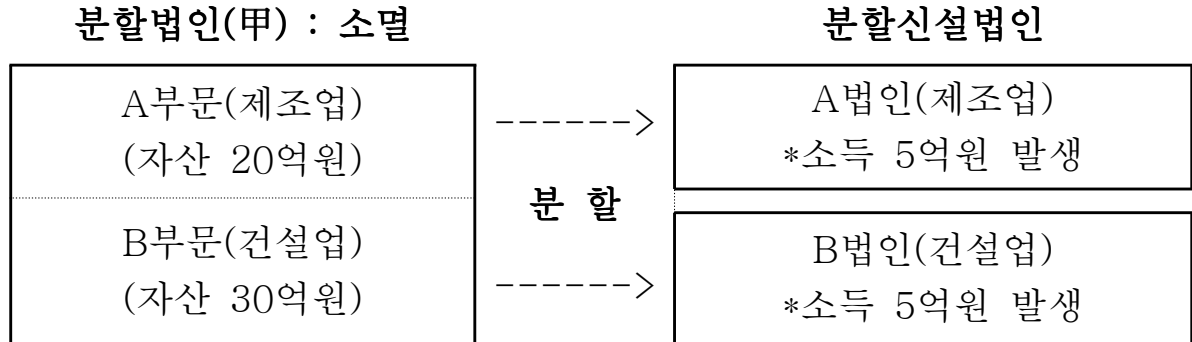
- 전체 소득을 합병당시 두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 제조업 소득 : 10억원 × 20억원/30억원 = 6.6억원
- 건설업 소득 : 10억원 × 10억원/30억원 = 3.3억원

⇒ 따라서,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승계한 이월결손금(5억원) 중 3.3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

(2)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사례> 甲법인이 제조업(A), 건설업(B) 법인으로 분할되고 소멸



* 甲의 결손금 : 10억원

□ 현재 법인이 분할한 후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갑)**의 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 그러나,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병과 동일함

□ 따라서, '06.1.1이후부터는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

○ 이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 받은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받은 것으로 간주

* 甲법인의 결손금(10억원) 안분 ⇒ A법인(제조업) : $10\text{억원} \times 20\text{억원} / 50\text{억원} = 4\text{억원}$

B법인(건설업) : $10\text{억원} \times 30\text{억원} / 50\text{억원} = 6\text{억원}$

원

○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 A법인 : 소득(5억원)에서 결손금(4억원) 전액 공제.

- B법인 : 소득(5억원)에서 결손금 공제후, 잔액 1억원은 당초 발생시점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

④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분할과세 방법은 ?

<사 례>

□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 하게 된 경우

- 물류센터 1개를 처분(장부가액 5억원, 합병당시 시가 9억원, 처분가액 10억원)하고 1년내 물류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취득(9억원)한 경우

□ 현재는 양도차익(5억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그러나, '06.1.1이후부터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과세

① 합병법인(A)이 당초 보유하던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 양도차익(5억원) 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양도차익(10억원 - 5억원) × (9억원/10억원) = 4.5
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
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②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한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 합병평가차익(4억원)과 양도차익(1억원)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9억원 - 5억원) + (10억원 - 9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

⑤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도

<사 례>

□ A·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A사업부문의 자산(장부가액 30억원, 시가 50억원)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A)를 설립한 경우

□ 현물출자도 세법상 양도에 해당됨

□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A)를 설립하는 경우

○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교부받은 자회사 주식의 시가 50억원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30억원 = 20억원)은 법인세 과세 대상

현물출자전	현물출자후
A사업부문 자산 30억원	자회사(A)주식 50억원(양도차익 20억원)
B사업부문 자산 20억원	B사업부문 자산 20억원

○ 다만,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차익(20억원)을 현물출자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추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예) 5년후 자회사(A)주식을 60억원에 처분시

·주식 양도차익(60억원 - 50억원 = 10억원)과

·과세이연된 금액(20억원)을 합하여 과세

⑥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방법

□ 지주회사 설립방법

① 주식 현물출자 : 현재도 지원

-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
-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기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지주회사주식을 배정받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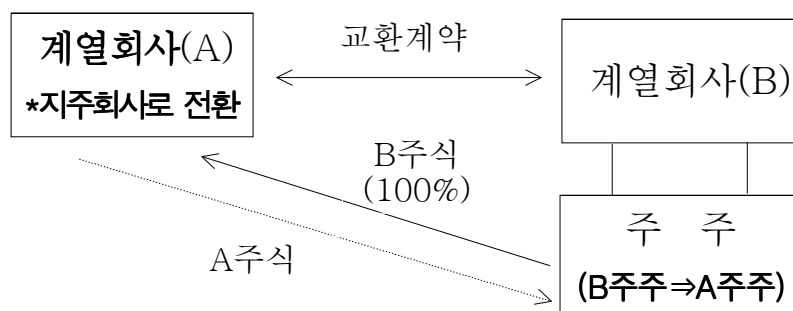
②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 : 현재도 지원

- 기존 회사간 계약에 의하여 회사(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지주회사)에 이전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교부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

* 계열회사 A, B간 포괄적 교환계약에 의해 B의 주주들이 보유주식 100%를 A법인이 발행한 신주와 교환

- ⇒ ·A는 B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전환
- B의 주주들은 지주회사 A의 주주로 변경



③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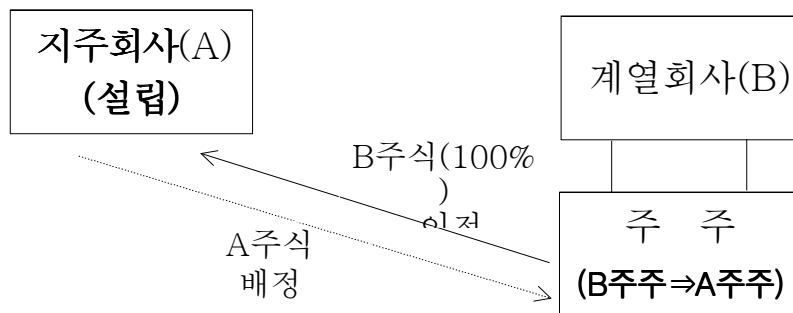
: 06.1.1부터 지원(금융지주회사는 현재도 지원)

-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배정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

* B의 주주들이 보유주식 100%를 이전하여 A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배정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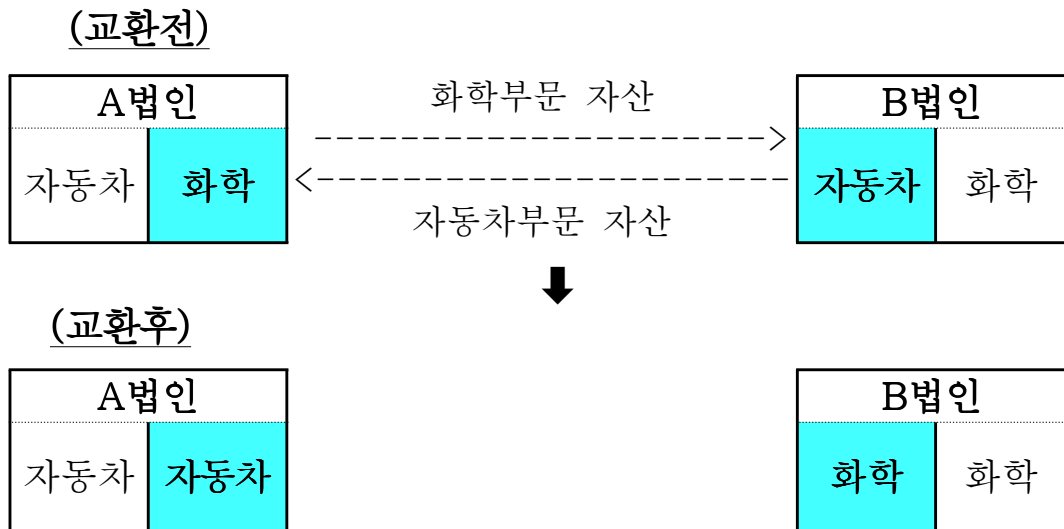
- ⇒ ·A는 B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설립
- B의 주주들은 지주회사 A의 주주로 변경



- 주주의 주식 현물출자,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신주의 시가 - 구주의 장부가액)은 신주 처분시 까지 과세이연

⑦ 자산 교환시 과세이연 방법

- 각각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간 업종 전문화를 위해 **자산교환**을 통하여 사업을 교환하는 경우
 - 자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되며, **양도차익**(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 - 교환으로 이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 다만, 자산교환시 과세하지 않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
-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교환연도말까지는 교환전에 다른 법인이 사용하던 용도와 동일하게 계속 사용되어야만 과세이연 적용 (사례의 경우 각각 자동차 및 화학에 계속 사용)



- 그러나, '06.1.1부터는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교환전의 다른 법인이 사용하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⑧ 중소기업자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내용은 ?

<사 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부지(장부가액 15억원, 시가 30억원)를 처분하고
 - 물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토지(20억원)와 기계장치(10억원)를 취득한 경우

① 개인 사업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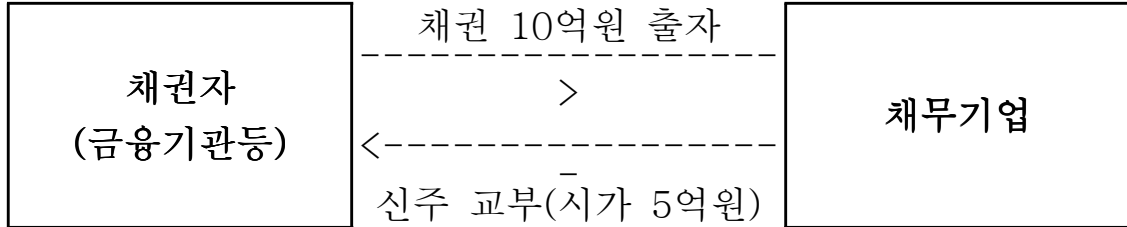
-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 중
 - 토지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과세이연*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
 - * $15\text{억원} \times 20\text{억원(토지 취득가액)} / 30\text{억원(공장 양도가액)} = 10\text{억원}$
 -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20억원)에서 과세이연금액(10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이 되며,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과세
 -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50%감면*
 - * $15\text{억원} \times 10\text{억원(기계 취득가액)} / 30\text{억원(공장 양도가액)} = 5\text{억원}$
 - 5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② 법인인 경우

-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3년째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⑨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 채무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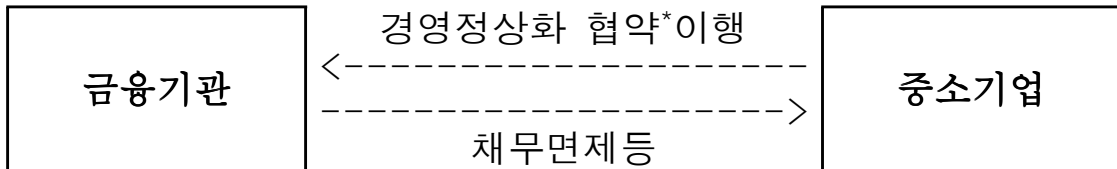
-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 다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 **부실징후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 '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 : 출자전환된 채권(10억원)과 신주가액(5억원)의 차액(5억원)을 **손비로 인정**

⑩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

□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

(요건)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



- * 경영정상화 협약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인 중소기업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약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이행
- 중소기업의 자구계획 :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부채 상환
- 채권금융기관 : 중소기업의 자구계획등을 감안하여 채권재조정(금융부채 일부 면제, 이자율 조정, 상환기한 연장등)

<사례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

○ 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을 처분하여 금융부채(8억원) 상환

○ 양도차익(5억원)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 5억원 × 8억원(부채상환액)/10억원(양도가액) = 4억원

- 법인의 경우 :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3년후부터 매년 1.33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양도세 감면

⇒ 4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례②> 최대주주의 자산 증여

- 최대주주가 소유 부동산(취득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법인에 증여
 - * 최대주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 법인은 증여받은 10억원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 법인

: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자산수증익(10억원)을 3년 거치 3년분할 과세

⇒ 3년후부터 매년 3.3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 최대주주가 법인에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최대주주

: 양도차익(5억원)중 법인에 증여한 금액은 양도세 50% 감면

* 5억원 × 10억원(증여액)/10억원(부동산 양도가액)= 5억원

→ 5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례③>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

○ 중소기업 :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채권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액을 손비로 인정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①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내용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호텔업·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영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 도박장(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폐광카지노 제외)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세제상 규제내용

- 접대비한도액을 일반업종 접대비 한도액의 20%만 인정
- 광고선전비중 매출액의 2% 초과분 손금불산입
-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배제

□ 그러나,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06.1.1부터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 접대비, 광고선전비등 경비지출에 있어 타 업종보다 규제하는 제도는 폐지

② 접대비 제도 개선내용

□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

○ 일반기업(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원이하분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분
적용률	2/1,000	1/1,000	3/10,000

⇒ 매출액 100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 1,800만원 + 2,000만원 = 3,800만원

○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 : ① + (② × 20%)

○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등의 경우 : ① + (② × 70%)

□ 다만, 다음의 경우 한도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손비부인

○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 : 신용카드·계산서·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이 없는 경우 손비 부인

○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인정

*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보관

□ '06.1.1이후 개선되는 내용

○ 소비성 서비스업,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차별을 폐지

○ 경조사비의 경우 법정증빙수취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예 : 아프리카)에

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정증빙수취 예외 인정

③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제도 개선내용

- 기업의 기부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 R&D 등 기업의 재투자
재원에서 지출되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기부금이 가급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지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 그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공제한도를 확대하되,
기업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공제한도를 축소
 - .개인 기부금 : 소득금액의 5% → 소득금액의 10% ('01)
 - .기업 기부금 : 소득금액의 7% + 자본금의 2% → 소득금액의 5% ('98)
- 이번 개정안에서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한도는
변동이 없음
- 다만, 법인의 경우 영리기업이 소득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 기업의 기부는 소득금액에서 강제적립금, 배당 및 재투자
재원을 제외한 만큼만 가능하고
 - 상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인이 실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기부한 사례도 없음
- 따라서, 현재 소득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
되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연도까지 1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2006 ~ 2008년 : 소득금액의 75%까지 인정
 - * 2009년 이후 : 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
- 한편,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국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동일하게

- 앞으로 3년간 소득금액의 75%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하여 형평을 제고

④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 주주의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배당에 대해 과세시 이중과세문제 발생

- 현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다음 제도를 운영

① 개인주주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법인세상당액 가산)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후, 법인세상당액을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상당액 : 배당 × 0.15 (13%의 법인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계산)

② 법인주주의 배당에 대해 익금 불산입

구 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율
일반법인	100%	100%
	50%(상장:30%)초과	50%
	50%(상장:30%)이하	30%
지주회사	100%	100%
	80%(상장:40%)초과	90%
	50%(상장:30%)이상	60%

-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타법인(1%이상)에 재출자시 익금 불산입 제한
⇒ 06.1.1부터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 제한
- '06.1.1부터 100%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익금불산입 배제

③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현재 SPC등 명목회사, 인적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 '06.1.1부터 비과세 되는 배당 또는 사실상 개인 1인이 운영

하는 명목회사의 지급배당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3.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① 외국계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려는 이유는?

□ 내·외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조세회피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 명목회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조세피난처)과 우리나라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서 현행 국조법상 명문규정이 없어도 국제거래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은 기확립된 원칙

○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에 확실히 명시

※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93누13162)

·네덜란드 회사인 씨싱톤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등록하였으므로 한·네덜란드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② 국내세법에 의해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 OECD모델 조세조약

-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이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과 상호 충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조에 관한 주석서 제22문단, 22.1문단)

□ 외국의 사례

① 미국 판례법상의 sham corporation 이론

- 어떤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상 목적(business purpose)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활동(business activity)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
 -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설립된 외국자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해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제공

② 스위스의 조세조약남용방지규정

- 동 규정은 조세조약이 스위스나 조약상대국의 거주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비거주자에게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국내세율(35%)로 원천징수한 후, 실질적인 수익자(effective beneficiary)가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스위스 과세당국이 조세남용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여부 결정

③ 독일의 남용방지규정

- 경제적·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조약혜택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3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④ 캐나다의 일반적 남용방지규정

- 어느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한 조세혜택은 부인됨

4. 조세피난 과세제도 정비

①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개념

-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총칭
 - * 특정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왜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있는가?

- 조세피난 과세제도는 거주자인 납세자가 해외투자를 함으로써 국내의 조세기반(the domestic tax base)을 부당하게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

③ 조세피난 과세제도 적용 배제

- 조세피난처에 공장등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 과세제도 적용 배제
 - 다만,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가 주업인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세피난 과세제도 적용

④ 누가 조세피난 과세제도를 적용받는가?

-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

⑤ 어떻게 과세하는가?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내국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배당소득으로 가산하여 과세

$$\text{배당간주금액} = \text{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times \text{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배당금·분배금) - (법정적립금) - (이미 과세된 금액중 배당되지 아니한 금액)

- ※ 배당간주금액으로 과세한 후 5년내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시 실제배당금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二重課稅 조정

⑥ 왜 조세피난 과세제도를 정비하려는가?

-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는 '96년 OECD 가입 이후 추진된 외환자유와 조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해외로 자본 유출시 과세대상을 폭 넓게 규정
- 최근 우리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역본부, 판매법인 설립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는 활성화하되 조세회피 목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피난 과세제도 정비

⑦ 정상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나?

㉠ 지주회사 설립 해외진출시 조세피난 과세제도 적용배제

(현행)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므로 모두 과세

예: 아일랜드에 설립한 지주회사의 실효세율이 15%이하인 경우 과세

(개정)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더라도 투자국가에 대한 위험분산 (country risk hedge)을 위해 정상적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진출하는 경우 과세제외

* 정상적 지주회사 : 자회사가 조세피난 과세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배당소득이 전체 수입금의 90%이상인 지주회사

예: 아일랜드에 설립한 지주회사의 실효세율이 15%이하인 경우라도 자회사들이 제조업을 영위하여 지주회사에게 배당하는 경우 비과세

㉡ 최소규정(De Minimis Exemption) 도입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조세피난처등에 설립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경우 조세피난 과세제도 적용 배제

* 실제발생소득 : 투자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5.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써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

② 현행 증여제도와와의 차이점은?

□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참고>

* 상속·증여세율

과세 표준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미만	5억원초과 10억원미 만	10억원초 과 30억원미 만	30억원초 과
세율	10%	20%	30%	40%	50%

* 증여재산 공제제도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비 고
증여재산 공 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3억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10년간 공제금액임

③ 구체적 사례는?

[사례1]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 증여시 : (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
- 상속시 :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
(총부담세액 : 9천만원)
-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1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30% = 2억3천1백만원
- * 1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 = 9천만원

[사례2]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 증여시 : (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
- 상속시 :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 납
부 (총부담세액 : 8억4천만원)
- * 사전상속제도가 없는 경우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
(증여재산 30억원-증여재산공제 3천만원)×40% = 10억2천8백만원
-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 = 8억4천만원

④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⑤ 창업의 범위는?

-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⑥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

○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 가능

예) 父소유 토지 시가 30억원(양도할 경우 양도세부담 10억원 가정)을 자에게 증여시

· 현금화하여 증여시 양도세 10억원을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 증여 가능

- 순증여액 18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10억원 - 증여세1.5억원)

· 부동산으로 증여시 30억원 전액 증여 가능

- 순증여액 27억 5천만원 (30억원 - 양도세 0 - 증여세 2.5억원)

⑦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 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 제출시 가산세 부과)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⑧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07.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 부가세 면세

① 민자로 건설된 기숙사 운영사업을 면세하는 이유 ?

□ 사립대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면세를 통해

- 국립대 민자 기숙사 사업*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기숙사 이용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학교시설 기부채납 시 영세율이 적용

② 사립대 민자유치 진행 중인 사업 ?

□ 사립대 기숙사 사업 민자유치 계획 (교육부)

- 총사업비 8,824억원

※ 4개 대학 1,446억원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이 교육부 승인을 받음 ('05. 7. 현재)

7.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①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란?

□ **어음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 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의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 **현금성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임

* 지급기간별 공제율 : (30일내) 0.3% (31일~60일) 0.15%

②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86.1%***에 이르는 등 당초 도입목적이 달성된 측면과

* '05년 중소기업청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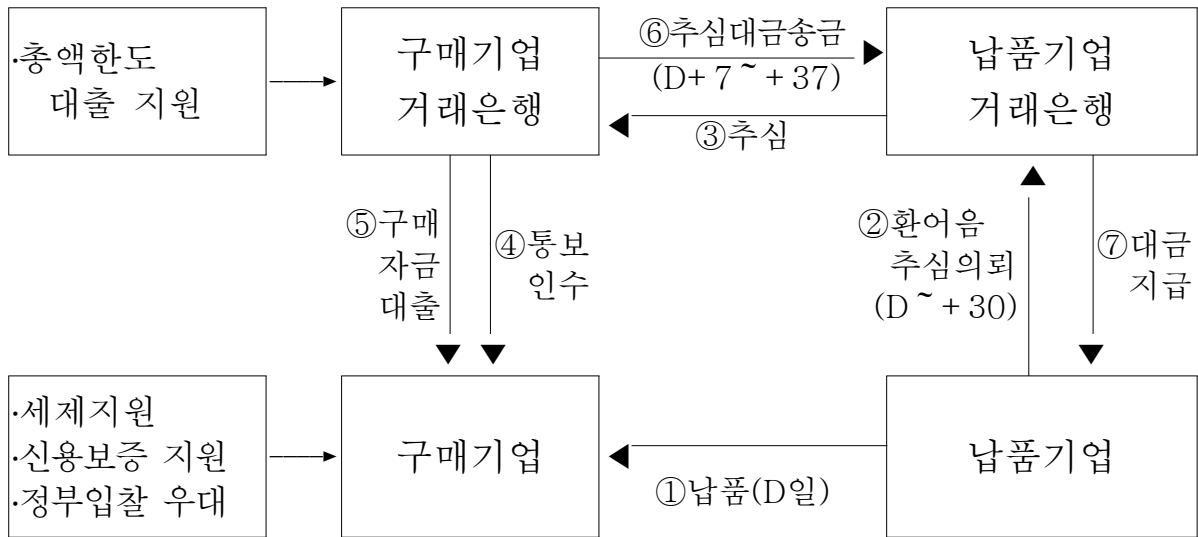
□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비용 등을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할 경우

○ R&D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와 기업어음세액공제제도가 **중복적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③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수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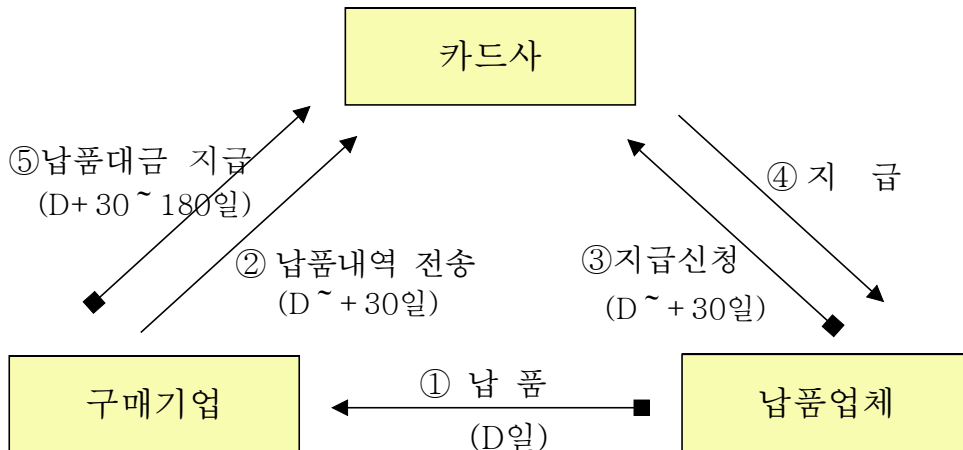
□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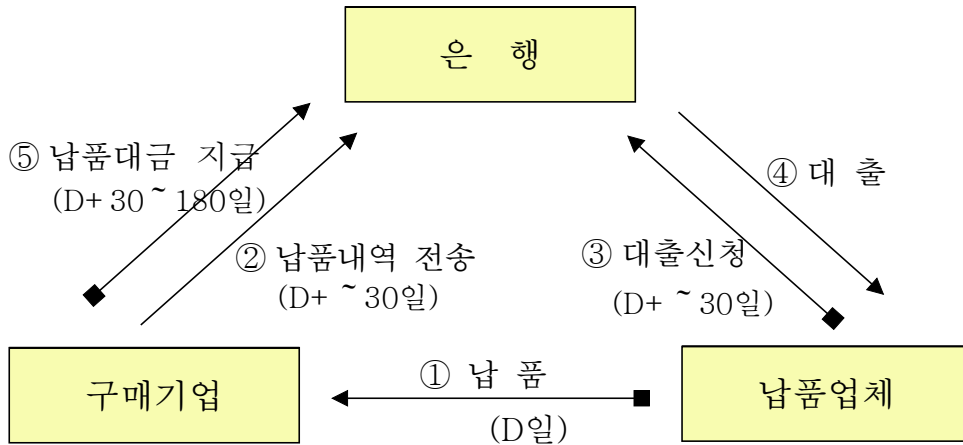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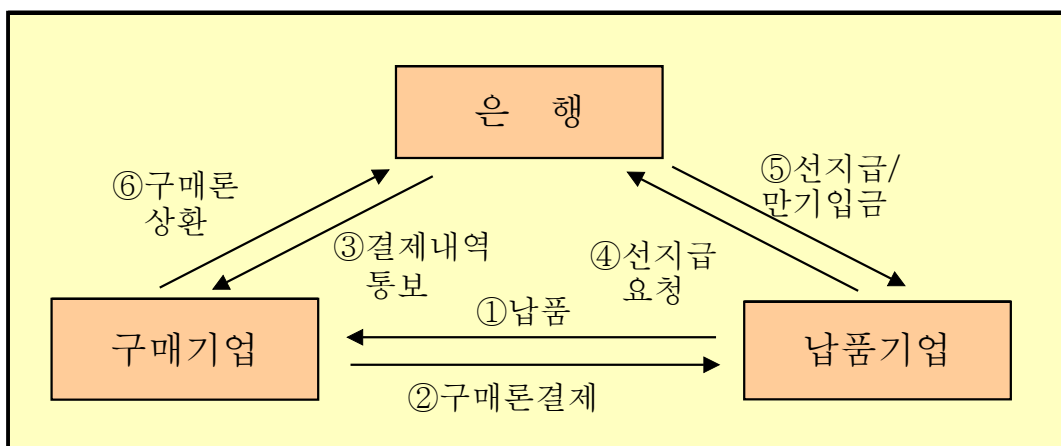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동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구매론

- 구매기업이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만기일을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
-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반면에 구매론은 대출채권으로 결제한다는 점이 다를 뿐 실질적인 기능은 동일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란?

-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로 1년동안(전년12월 ~ 금년11월) 사용한 금액이
 -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9.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현행 세금우대 저축 현황

구분	저축명	특례 요건	지 원 내 용
비 과 세	장기주택 마련저축 (조특법87조)	· 18세이상 · 무주택자세대주 · 85㎡이하 주택소유세대주 · 분기300만원 · 7년이상	· 비과세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적용시한: '06.12.31가입분까지
	연금저축 (조특법86조2)	· 18세이상 · 분기300만원, 10년이상	· 소득공제 : 240만원한도 · 연금수령시 과세
	조합등 예탁금 (조특법89조3)	·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등 · 2천만원	· '04. ~ '06 : 비과세 · '07 : 5% · '08부터 9%분리과세
	조합등 출자금 (조특법88조5)	· 조합원, 회원등 · 1천만원	·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소득시행령25조)	· 개인 · 10년이상	· 비과세
	생계형저축 (조특법88조2)	· 노인(60세), 장애인 등 · 3천만원	· 비과세
	농어목돈 마련저축 (동법률)	· 2ha또는20t이하농지, 선박 소유농어민 · 월 12만원 · 3년, 5년	· 비과세 *적용시한: '06.12.31가입분까지
	장기주식형저축 (조특법87조4)	· 개인 · 8천만원이하 · 1년이상, · 주식보유비율60%이상	· 비과세 *적용시한: '05.12.31발생소득까지
저 율 과 세	세금우대 종합저축 (조특법89조)	· 개인 : 4천만원 · 노인(남60세, 여55세) 등 : 6천만원 · 미성년자 : 1천5백만원 · 1년이상	· 9%분리과세

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률을 40%에서 30%로 축소하는 이유는?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91년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2차례에 ('97, '00)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동 감면제도는 현재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고 있으나
 -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향후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할 계획
- 다만, 향후 관세감면 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 우선적으로 금년은 감면수혜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감면률을 40%에서 30%로 일부 축소하는 것임

* 감면 수혜비중 : 대기업 70%, 중소기업 30%

<참고> 연도별 관세감면 실적

연 도	'01	'02	'03	'04
감면액(억원)	787	794	1,063	1,225

1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 현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산정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
-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됨

(사례) 아버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감면

□ 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인 점을 감안하여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 상속인이 최소한 3년 이상 자경해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종전)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감면

(개정) 8년자경 농지 상속 → 상속인(비영농) 양도세 과세

↳ 상속인(3년 자경) 양도세 감면

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된다는데?

-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과세되는 양도세가 감면한도인 1억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감면 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 따라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감면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

1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

-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 공제대상 및 공제액

구 분	상품종류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1) 주택마련 저축공제	① 주택청약부금 (’05년말 불입분까지)	불입액의 40%	(1)+(2) 의 합계
	②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의 40%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2) 원리금 상환액 공 제	⑤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05년말까지 상환액)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	300만원
	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3) 이 자 상환액 공 제	⑦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전액	(1)+(2)+(3) 의 합계 1,000만원

② 개정된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적용시기는?

- 기존에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차입한 분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고
 - 새로이 가입하거나 차입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음

③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주택공시가격
 - ☞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의 주택공시가격
 - ☞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현재는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예정
 - * 참고로 소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

<참고> 세대별 전국 주택소유현황

- 총 주택수 1,370만호(APT 508만호, 37%)
 - 주택소유 세대 832만세대 (1세대 2주택 이상 33.2%)

구 분	총 세대수	비율	아파트	비율
1세대 1주택	556만세대	66.8%	399만세대	89.0%
2주택	158	19.0	43	9.5
3~4주택	89	10.7	6	1.2
5주택 이상	29	3.5	1	0.2

- 주) 1) 법인소유, 1세대 2호 이상(임대사업자로 추정)제외
 2)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산정(건축법상은 단독주택 취급)
 3) 임대사업용 주택 포함(25천명, 67만호)

* 자료 : 행정자치부 발표, 03.11.25

1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①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이란?

-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남·북 이중과세 방지합의서에 의하여 비과세
-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도 포함
 -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제도는 '70년대 해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15.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

① 과세전환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私人의 지위에서 사계약 또는 사법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 조세부담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민간과의 공정경쟁을 왜곡시키는 업종
 - 예시
 - 부동산 임대업(예: 시민회관 임대 등)
 - 도·소매업(화장품 판매, 생수판매 등)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기타 서비스업 중 목욕탕업 및 예식장업 등

② 과세전환 시기는 ?

-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 1. 1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

16. 주세율 조정 관련

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배경은?

- '03년 정기국회에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증류주 세율 인상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맥주세율 단계적 인하 : 100%('01) → 90%('05)→80%('06)→72%('07)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

* 음주의 사회적 비용(2000년 기준) : 15.5조원(GDP의 약3%수준)

- 주종별 사회경제적비용은 소주등 증류주가 89%, 맥주가 7%, 와인이 3%로 추계

- 소주 등 고도주인 증류주의 세부담 수준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주 등 증류주의 세율을 인상

※ 소비자가격중 세금비중 비교(%)

구 분	한국	OECD평균	영 국	독 일	프랑스	미 국	일 본
위스키	45(42*)	59	61	61	53	45	26
와 인	26	33	45	13	19	21	18
맥 주	45	37	40	20	24	19	46

* ()는 소주임, 세율 인상시 소주는 47.5%

②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은?

- 소주세율을 72%에서90%로 인상되는 경우 97원/병 인상되어 출고가가격은 897원이 예상되며 물가는 0.04% 인상될 전망

	현행(72%)	'06(90%)
세전출고가	376원	376원
세금계	424원	521원
세후출고가	800원	897원
예상소비자가	1,000원	1,100~1,200원

- 다만, 맥주세율의 인하로 인하여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맥주세율 인하로 인한 물가효과 : $\Delta 0.03\%$

-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더라도 맥주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 전체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님

* 맥주 세율 80% 인하시('06) 출고가가격은 약 60원 인하

- 72% 인하시('07) 출고가가격은 약 108원 인하

17. LNG 세율 조정

① LN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

-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세율에 비하여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의 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 LNG와 등유에 대한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등유 사용 가구의 연간 난방비(840천원)은 LNG 사용 가구 난방비(420천원)의 약 2배 수준('02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 도시지역은 대부분 저렴한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대부분 등유를 사용
 - * LNG사용비율 : 시지역(61.7%), 군지역(0%)
 - 등유사용비율 : 시지역(38.3%), 군지역(100%)
 - 소득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상위계층은 주로 LNG를 사용
 - * 월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 등유(68.7%), LNG(31.3%)
 - 월소득 150만원 이상 가구 : 등유(37.5%), LNG(62.5%)
- LNG의 세율을 적정수준 인상함으로써 중유 수요가 LNG로 대체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다소 완화될 것임
 - 최근 국내 중유 수요의 감소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량을 해외에 덤핑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 * 중유 수출입실적(04년) : 수출 45,506배럴, 수입 8,282배럴
 - * '04년 소비 증감율(전년대비) : (중유) △10.2%, (LNG) +12.0%

* 증유와의 단위열량당 가격 비교

- LNG의 단위열량당 세금은 증유보다 높으나 가격은 증유보다 낮은 수준

구 분	가 격*	열량당 가격 (원/10 ³ kcal)	단위열량당 세금 (원/10 ³ kcal)
증 유(B-C)	472.74원/ℓ	48.74	6.23
LNG(산업용)	432.73원/m ³	41.21	7.77

* 증유 : 대리점 가격, LNG : 도매가격(전국동일), LNG는 가스공사 독점공급

② 세율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 증가

세율인상에 따라 가구당 난방비는 매월 약 1,300원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세율인상으로 약0.06%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18.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① 퇴직연금 제도란?

- 기업 또는 근로자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등을 적립하여정년퇴직 후에 지급받는 제도로 DB형과 DC형으로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부형 (Defined Benefit)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퇴직시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퇴직시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
관리의 형태	근로자 전체 신탁을 개인별로 구별하여 운영	근로자 전체의 신탁
기여금	확정	산출기초 변경시 변동
급부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	확정(급여의 일정비율)
위험부담 (이자율·물가변동)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통산제도 (회사이동시)	용이	어려움

※ 근로자가 직장이동시에는 통산장치(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를 두어 퇴직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개인퇴직계좌에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공적연금과 달리 공제한도를 두는 이유는?

- 공적(국민·공무원)연금의 경우 개인 불입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 실제 불입액이 보수월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어 연간 공제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실질적인 한도 설정효과)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4.5%(고용주 4.5%)
(지역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9.0%
 - ** 공무원연금 : 보수월액의 8.5%
- ※ 국민연금 연간 최대 불입액(만원) : (사업장) 194 (지역) 389
공무원연금 연간 최대 불입액(만원, 국가일반직 5급) : 318
- 퇴직연금은 추가불입액에 대해 불입한도가 없어
 -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의 개인 추가불입액을 전액 공제할 경우
 - 실질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

③ 연금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이유는?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에 소득세 부담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전환의 장애요인 제거
 - 이를 위해 연금소득공제 확대 및 퇴직소득 공제율 축소

④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한다는데 기설정된 총당금은 어떻게 되나 ?

- 현재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외적립하거나 사내유보하는 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
 - 사외적립 : 실제불입하는 퇴직 보험료등
 - 사내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도내에서만 손비인정
 - 당기 설정한도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10%
 - 누적 설정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그간 총당금의 적립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으나,
 - 당기 설정한도는 그대로 두고 누적 설정한도만 축소한 결과, 누적 설정한도액이 당기 설정한도액과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어
 - 이번에 누적 설정한도를 퇴직금추계액의 30%로 축소하는 한편, 당기 설정한도도 현실에 맞게 총급여액의 5%수준으로 축소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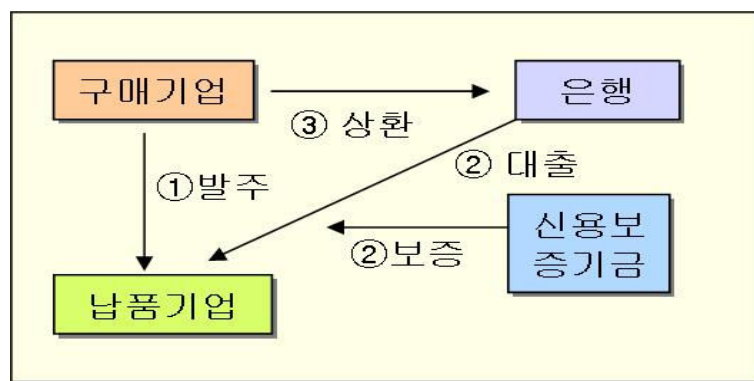
- 개정규정은 '06.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 기 설정된 총당금에는 영향이 없으며
 - 이미 누적 설정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추가로 총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19.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제도 활성화

① 네트워크론 제도란?

-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동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 * 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

<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



② 다른 현금성 결제수단과 달리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 다른 현금성결제수단과 달리 네트워크론은 납품전에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선대출 해주는 제도로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

①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요

-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납부면제제도 :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20 ~ 40%)×부가가치세율(10%)
-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 : 40%
- * 부가가치율(법§26)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 ~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 부가가치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000만원 가정)

-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 : 160만원

·4,000만원 × 40%(부가율) × 10%(세율)

-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 : 120만원

·4,000만원 × 30%(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40만원(연간 25% 감소)

○ 소매업(연간 매출액 4,000만원 가정)

-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 : 80만원

·4,000만원 × 20%(부가율) × 10%(세율)

-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 : 60만원

·4,000만원 × 15%(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20만원(연간 25% 감소)

③ 음식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배경은 ?

- 영세자영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 숙박업 및 소매업이 영세사업자 증가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
 -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로 경영여건 악화
 - * '97부터 '04까지 음식업 증가율(11%)은 자영업 증가율(3.5%)의 3.1배
 - *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납부자(222천명) 중 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70%(155천명)임

21. 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① 사업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유

-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되므로 국고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

② 요건 완화 이유

-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22. 장기임대주택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및 요건은?

□ **현행제도**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세율 8~35%)

□ **세제지원 내용** : 배당소득에 대해 14%세율로 분리과세 ('08.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사회간접자본채권(15년이상)의 이자 : 14%
- 분리과세 신청 장기(10년이상)채권 : 30%
- 세금우대종합저축 : 9%
- 장기(1년이상)보유주식배당소득(액면5천만원~3억원) : 5%
- 선박투자회사 배당(액면3억원초과분) : 14%

□ **세제지원 요건**

○ **간접투자형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REITs

○ **자산운용방식**

- 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
- *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100%를 선박매입·건조에 투자

○ **자산운용기간**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기간을 제외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투자할 것

23.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

① 현재 영세율 미적용 농약은 ?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중 저독해충약, 고독성농약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치사량을 기준으로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독성농약은 2005년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음

② 저독성 농약(1급)이란 ?

- 잉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가 0.5mg/l미만인 제품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 2004년도에 1,400억원 판매 (전체 농약매출액의 14%)

③ 농약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과세전환하는 이유 ?

- 독성이 높은 농약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크고 농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외부불경제가 크므로 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약사용량을 축소하는 정책 추진 중

24.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

- 농·어민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사료
- 농업용 : 경운기, 트랙터, 난방기 등 48종
- 축산업용 : 포유기, 부화기, 사료저장탱크 등 50종
- 임업용 : 톱밥제조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등 15종
- 어업용 : 어망, 선박용 기관 등 38종
- 친환경농업용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3종

25. 과세인프라 구축

① 지급조서란 ?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 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②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 이유

□ 소득과약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 이러한 소득과약 인프라 확대를 통해

-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과약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과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지급조서 제출방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업종별 특성에 맞게 지급조서 제출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

* 지급조서 제출방안(例示)

- 기존의 현금영수증 전산망을 활용하여 전산신고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전자카드 시스템과 연계

26.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본사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②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에 의하면
 - 본사의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거여건이나 사업환경 적응을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
- 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 순차적으로 이전한 인원을 합하여 계산

③ 변경된 제도 적용 사례

<가정>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이전등기)
본사 전체인원(b+ c)	1,000	1,000	1,000
당해연도 이전인원(a)	■	■	■
이전본사 근무인원(b)	100	400	600
수도권안 본사인원(c)	900	600	400

<감면요건 적용례>

(현 행) '07년에 지방이전한 인원만을 대상

- 이전인원 : 200명
- 이전비율 : $33.3\% = 200\text{명} / (200\text{명} + 400\text{명})$
⇒ 50% 미만이므로 세액감면 해당안됨

(개정안) '05 ~ '07년까지 이전한 인원을 대상

- 이전인원 : 600명
- 이전비율 : $60.0\% = 600\text{명} / (600\text{명} + 400\text{명})$
⇒ 50% 이상이므로 세액감면 가능

27.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① 신설 이유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수정·보완 사항은

- ① 지원대상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 ② 비수도권을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후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며
- ③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 등임

<참고>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및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 모두 소득·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②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비교

구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 비수도권 :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중소기업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27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33개 업종 * 추가 업종 :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기술계학원, 분뇨처리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지역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비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비수도권(광역시, 신활력지역 제외) ○ 신활력지역 (거창, 청양, 화천 등 70개 사군)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40%;">업종</th> <th style="width: 15%;">수도권</th> <th style="width: 15%;">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소 기 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소매의료· 자동차정비·관광업등 5개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 등 22개 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 기 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매업 등 5개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 등 17개 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식기반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p>	구분	업종	수도권	비수도권	소 기 업	도소매의료· 자동차정비·관광업등 5개업종	10	10	제조업 등 22개 업종	20	30	중 기 업	도매업 등 5개업종	-	5	제조업 등 17개 업종	-	15	업	지식기반산업*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업종기준을 폐지하고 지역낙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 - 광역시 : 20% - 비수도권 : 30% - 신활력지역 : 40%
구분	업종	수도권	비수도권																					
소 기 업	도소매의료· 자동차정비·관광업등 5개업종	10	10																					
	제조업 등 22개 업종	20	30																					
중 기 업	도매업 등 5개업종	-	5																					
	제조업 등 17개 업종	-	15																					
업	지식기반산업*	10	15																					

③ 신활력지역이란?

-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04.9.3 70개 시·군 고시)

시·도별	신활력지역	비고
서울		
경기		
인천	옹진, 강화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영월, 정선, 고성,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태백	12
충북	괴산, 보은, 영동, 증평, 단양	5
충남	청양, 금산, 부여	3
전북	순창, 진안, 임실, 무주, 장수, 고창, 부안, 김제, 남원	9
전남	신안, 곡성, 장흥, 강진, 진도, 보성, 구례, 고흥, 완도, 담양, 해남, 함평, 장성, 무안, 화순, 나주, 영암	17
경북	영양, 울릉, 청송, 봉화, 군위, 영덕, 예천, 의성, 청도, 성주, 상주, 문경, 고령	13
경남	의령, 함양, 산청, 합천, 남해, 거창, 하동, 고성, 창녕	9
제주		
계		70

④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효과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

(단위 : %)

업종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일반지역	신활력지역
소기업	도매업 등 5개	- (10)	20 (10)	30 (10)	40 (10)
	제조업 등 22개	- (20)	20 (30)	30 (30)	40 (30)
중기업	도매업 등 5개	-	20 (5)	30 (5)	40 (5)
	제조업 등 18개	-	20 (15)	30 (15)	40 (15)
	부가통신업 등 4개	- (10)	20 (15)	30 (15)	40 (15)

* ()는 현행 감면율

[사례] 과세표준이 30억원(매출 300억원수준)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세부담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중기업			
	수도권	광역시	일반지역	신활력
현행	738.0 (0)	627.3 (15)	627.3 (15)	627.3 (15)
개정	738.0 (0)	590.4 (20)	516.6 (30)	442.8 (40)
증감	-	△36.9	△110.7	△184.5

* 하단 ()는 감면율

⑤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범위

구 분	내 용
업 종	·제조업 등 32개 업종
규 모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예시>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업: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독립성 기 준	·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상장·등록법인)이 발행 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소기업 범위

1. 제조업 : 100명 미만
2. 광업·건설업·운수업 : 50명 미만
3. 기타 사업 : 10명 미만

28. 성실 중소기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①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배경

-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걱정
- 따라서,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이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 감면 적용방법을 대폭 단순화표준화하여
 - 성실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근거과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하고, 증빙수취 등 세법상 각종 의무도 유지
- 또한,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도 전년대비 1.1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감장치를 마련
- 동제도는 전자장부 개발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간편납세제도 적용시 세부담 비교

- 간편납세제도는 성실 중소기업자의 세부담을 무조건 경감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며
 -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중소기업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세부담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일 반	간편 납세제도
○ 감면 :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 40% *최저한세(10%) 적용	개산세액공제 *20%(수도권 10%) *최저한세(10%)
배제	창업감면,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감면 선택적용 가능 *중복 적용은 배제	다른 감면 배제
○ 수입금액증가 시	1.3배 초과증가시 세액공제 기본신장을 초과분 상당세액의 150%	1.1배 초과증가 초과증가분 상당 세액의 100%

(1년차 100%, 2년차 50%) (1회)

*최저한세(10%) 적용

*최저한세(10%)

배제

<사례1>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매출액 5억원(전년 매출액 : 甲 3.7억원, 乙 4억원, 丙 4.6억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일반적으로 간편납세제도가 유리

	甲(135%)		乙(125%)		丙(109%)	
	일반	간편	일반	간편	일반	간편
①과세표준	5,000만원	5,000	5,000	5,000	5,000	5,000
②세율	13%	13%	13%	13%	13%	13%
③산출세액(①×②)	650	650	650	650	650	650
④감면세액	121	186	-	143	-	65
·균형발전세액감면(0%)	-	-	-	-	-	-
·개선세액공제(10%)	-	65	-	65	-	65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③×1.1배초과매출/매출)	121 *650×0.93/ 5 **60.5 : 다음 연도 추가공제	121 *(좌동) **다음 연도 공제 없음	-	78 *650×0.6/ 5	-	-
⑤감면후 세액(③-④)	529	464	650	507	650	585
⑥최저한세(①×10%)	500	-	500	-	500	-
⑦납부할 세액 (MAX ⑤, ⑥)	529	464	650	507	650	585
⑧실효세율(⑤/①)	10.6%	9.3%	13%	10.1%	13%	11.7%

<사례2> 비수도권(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원(전년 매출액 : 甲 7.4억원, 乙 8억원, 丙 9.2억원)
- 과세표준 : 1억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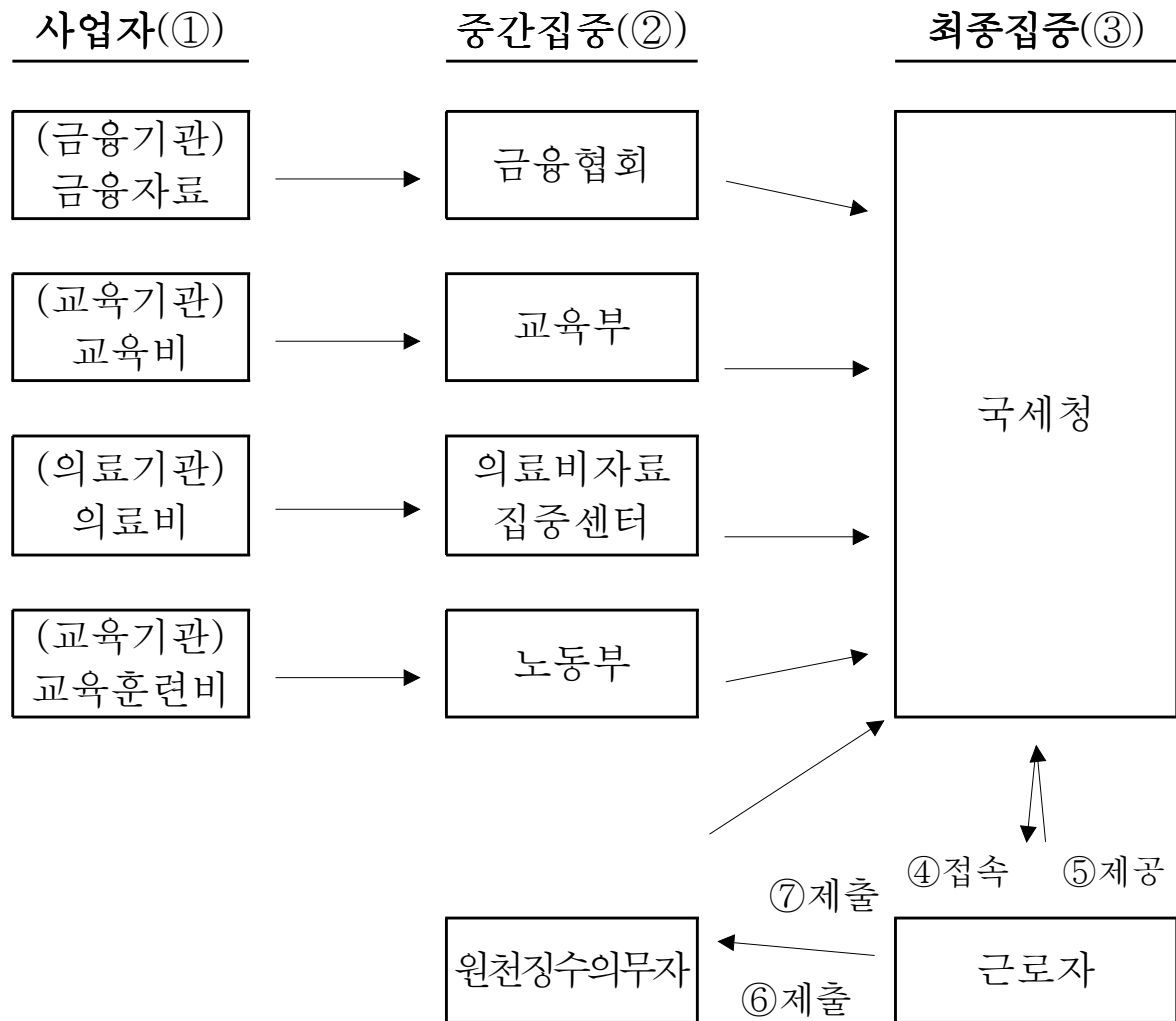
□ 소재지, 매출증가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

	甲(135%)		乙(125%)		丙(109%)	
	일반	간편	일반	간편	일반	간편
①과세표준	15,000만원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②세율	13%, 25%	13%, 25%	13%, 25%	13%, 25%	13%, 25%	13%, 25%
③산출세액(①×②)	2,550	2,550	2,550	2,550	2,550	2,550
④감면세액	984	984	510	816	510	510
·균형발전세액감면(20%)	510	-	510	-	510	-
·개산세액공제(20%)	-	510	-	510	-	510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③×1.1배초과매출/매출)	474 *2,550×1.86 /10 **237은 다음 연도 추가공제	474 *(좌동) **다음 연도 공제 없음	-	306 *2,550×1.2/ 10	-	-
⑤감면후 세액(③-④)	1,566	1,566	2,040	1,734	2,040	2,040
⑥최저한세(①×10%)	1,500	-	1,500	-	1,500	-
⑦납부할 세액 (MAX ⑤, ⑥)	1,566	1,566	2,040	1,734	2,040	2,295
⑧실효세율(⑦/①)	10.4%	10.4%	13.6%	11.6%	13.6%	13.6%
* 비수도권 중소기업 (균형발전감면 30%)	10%	10.4%	11.9%	11.6%	11.9%	13.6%

29. 연말정산 간소화

① 연말정산 간소화체계 및 기대효과

□ 연말정산 간소화 체계



□ 기대효과

- (기대효과)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납세자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변조 기술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 방지

- (적용대상)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직업훈련비 → 제출자료의 약80%

②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공제항목	간소화여부	간소화 불가능사유
1	보험료	○	-
2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관리 (별도 제출 필요없음)
3	신용카드사용액	△	'06년 연말정산시 시범실시 '07년 연말정산시 본격실시
4	주택자금	×	공제요건 복잡
5	연금저축	○	-
6	개인연금저축	○	-
7	교육비*	○ (일부 불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 및 독학사비 등 전산화 곤란
8	의료비**	○ (일부 불가능)	보청기, 안경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전산화 곤란
9	직업훈련비	○	-
10	기부금	×	전산화 곤란
11	창투조합 등 출자액	×	실효성 약함(3천명)
1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관리 (별도 제출 필요없음)
13	혼인비	×	전산화 곤란
14	장례비	×	"
15	이사비	×	"

* 교육비 : 초중고 공납금, 대학교 등록금, 유치원비 등

**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30.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란 ?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란

- 과세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 사후 불복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서비스 제도

□ 현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 상급청의 하급과세관청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
- 실지조사 과생자료
-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 추가될 단순 과세자료의 주요 유형 (전산자료가 89% 점유)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 신용카드자료
- 소득세 : 소득합산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
- 법인세 : 감면사후관리자료, 판매장려금 자료

31. 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

① 급여액에 따라 압류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배경은?

-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 국세징수법에도 수용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

※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은 아래 ②의 방식에 따라 급여에 대한 압류 가능금액 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임

②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 계산방식은 ?

- 기존에는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을 세분화
-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20만원을 최소 압류금지금액으로 설정하고, 600만원 초과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4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

종전	개정	
	급여구간	압류금지금액
급여총액의 1/2	120만원 이하	120만원(최저생계비 수준)
	120만원 초과~240만원 이하	120만원(최저생계비 수준)
	24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급여총액의 1/2
	600만원 초과	300만원(표준가구생계비 수준) +(600만원 초과분×1/4)

예:) 월 급여 800만원인 경우의 압류금지금액; 3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4 = 350만원

32. 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

① 대법원의 전자등기 신청 및 처리 방법

-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접수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인터넷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는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첨부

② 인지세법 개정 내용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나
 -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경하여 제출할 때 소인변조를 통한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 발생 가능성
-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대신 인터넷상에서 현금등으로 전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인지세법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 위탁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

33.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

①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예를 들어, 현재 수입업자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 먼저 식약청에 식품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수입승인을 받고난 이후
- 세관에 관세 등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수입통관이 완결되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상황

□ 향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운용하게 되면,

- 모든 수출입자는 세관신고 한번만으로 관계기관(식약청·국립식물검역소 등)의 모든 신고행위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 세관이 관계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임

*** 수입요건 확인**

； 식품위생법 등 25개 법률, 식약청·식물검역소 등 27개 기관

□ 현재 관세청은 식약청 등 8개기관(10개 신청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를 운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

<참고> : 통관단일창구 대상기관 및 신청서

※ 우선적으로 식약청·국립식물검역소 등 8개 기관과
10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진

	관련기관	근거법령	품목	요건서류
1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등 수입신고서
2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수산물	식품등 수입신고서
3	국립 식물검역소	식물방역법	식물	식물등 검역신청서
4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	동물 검역신청서
5	“	“	축산물	축산물 검역신청서
6	“	축산물 가공처리법	축산물	축산물 수입신고서
7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약사법, 화장품법	의약품, 화장품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8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9	한국동물 약품협회	약사법	동물약품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10	한국치과 기재협회	의료기기법	치과기재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② 세관장의 승객예약정보 제출요구권을 신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현재도 관세청에서는

○ 항공기(또는 선박)가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승객명단*을 미리 입수하여 우범여행자 선별 등에 활용하고 있음

*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여행자가 입국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우범여행자를 선별하는 등의 사전 대응체계

□ 그러나 향후 여행객 가장 밀수·테러물품 반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객예약정보(PNR)*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PNR(Passenger Name Record)

: 항공사(선사 포함)의 예약정보 시스템 및 탑승수속시스템에 있는 예약 정보로서 예약자의 신원사항·예약일·동반탑승자 등에 관한 정보와 탑승 및 환승 일정 등에 대해 수록

※ 승객예약정보 사전 입수에 관한 입법례

(국내)

◇ 출입국관리법(§73②)

- 예약정보시스템 자료를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제출

(해외)

◇ 미국 : 항공안전법(49 USC) 및 관세법 시행령(19 CFR)

◇ 캐나다 : 관세법, 이민·난민 보호법

◇ 호주·뉴질랜드 : 관세법

34.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관세의 가산세 부과체계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가?

- 현행 관세의 가산세 부과 체계는 단지 부족세액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 추정시 관세의 가산세 : 10% + 연리 4.745%

- 이를 내국세처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세분화하여 가산세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관세의 가산세 부과체계 개정안 >

	구 분	추 정	수정신고
현행	가산세	10%+ 연리 4.745%	10%(6월내 5%)
개정안	신고불성실	10%	10%(6월내 5%)
	납부불성실	연리 4.745%	연리 4.745%